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2003년 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 Factors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리차드 쿠린 (Richard Kurin)

미국 스미소니언 민속문화센터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소장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2003년 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

● 리차드 쿠린 (Richard Kurin)

미국 스미소니언 민속 문화유산 센터(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소장

## 서론

2003년 유네스코 비엔날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새로운 국제협약의 채택을 압도적인 표로 가결시켰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약은 확대되어가고 있는 글로벌화와 문화의 균질화에 직면해 있는 전 세계의 각 지역 및 국가적이며 민족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Matsuura 2004). 일본어의 무케이 분카즈를 대략 영어로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적 공동체 내에서 이전 및 전수되는 지식 및 구전, 표현문화, 사회적 관례, 일시적 미의식의 발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무형문화유산은 전설 및 구전에서부터 음악, 축제, 민간의학, 공예, 요리법, 토속 건축물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각국 정부는 이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문서화 및 목록의 작성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 이 협약의 법적 구속을 받는다. 또한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전시, 보존, 보호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집단들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협약이 무형문화유산을 인권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표현의 형태로 유일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협약을 위해 각국에서 선출된 새로운 국제 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에서 2가지 목록을 만들 예정이다. 하나는 각국 정부가 제안한 대표적 전통에 대한 목록이며 또 하나는 신규 설립된 국제 기금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할 멸종 위기의 보호 대상 전통 목록이다. 협약 조문은 널리 배포되었으며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sup>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25/132540e.pdf> (retrieved November 27, 2006)

협약은 2006년 4월 발효되었으며, 2007년 5월 말 중국, 인도, 일본, 나이지리아, 이집트, 프랑스, 스페인,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 78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여 2008년에는 10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6년 당시 미국은 자국의 위치를 재고 중이었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협약은 각 국가 및 기관의 업무에 정례화되어 수년 이내에는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표준 수립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와 협약의 초안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이 진정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았다(Bedjaoui 2004). 일례로 지난 세기와 비교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 수천 여 언어 집단이 사라졌으며, 이들과 함께 수많은 구전 문학, 일화, 전설, 그리고 과거에 인류가 세계를 바라보고 상상하던 시각도 사라졌고 따라서 미래의 그러한 시각들도 사라지게 되었다. 음악, 춤, 행위예술, 의식, 요리법 및 직업적 전통, 공예기술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지식 체계들이 사라졌으며 혹은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것들이 이들의 자리를 대체해 부상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것들 보다 덜 현지화되어 있으며 기존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전 세계 문화적 관습의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de Cuellar 1997, Serageldin 1998, Graves 2005를 참조). 만약 무형유산협약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가장 큰 의문점은 바로 이 새로운 협약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문화적 전통과 이를 따르고 풍부하게 하며 전수하는 문화 집단들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

\* 스미소니언 연구소 및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MoU 기념식 공식 취임 연설, 2006년 11월 23일, 쿠린 박사는 호주 브리즈베인(Brisbane)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교의 박물관학 명예교수이다.

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 하며 어떻게 끝맺음될 것인지의 문제를 고찰해 볼 것이다.

필자는 무관심한 분석가가 아니라 이 협약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스미소니언 민속 및 문화유산 연구센터의 소장 자격으로 1999년 유네스코와 함께, 1989년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의 전 세계적 평가: 현지의 권한과 국제 협업<sup>2</sup>이라는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위해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유네스코의 1989년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포함된 전통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했다.

필자는 권고안의 효력에 관한 유네스코의 설문조사를 통해 100여개 이상 국가들의 반응을 연구했고, 이를 통해 권고안이 대개 무시되거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Kurin 2001). 협약은 전통문화 혹은 민속에 대한 재정적, 공동체와의 협업, 그리고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강조했다(Seitel 2001c).

결과적으로 스미소니언의 연구원들은 유네스코가 조직한 다양한 전문가 회의에 참여했다(Seitel 2001a, 2001b). 필자는 고이치로 마수라(Koichiro Matsuura) 사무총장의 임명으로, 유네스코의 대표적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선언을 위한 국제 심사위원단(International Jury for UNESCO's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이후 정부 간 초안 회의 및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2003년 협약에서 미국 국무부를 위한 서한문을 작성했다. 미국의 위원단 재가입 당시 필자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지명에 따라 유네스코 미국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파월 장관의 후임자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재임명을 받았다. 이처럼 공식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이 글에 제시된 의견이나 해석, 결론들은 온전히 필자의 시각만을 반영한 것으로 유네스코나 스미소니언 연구소, 미국 유네스코 국가 위원회, 혹은 미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협약의 제2장 1절에 따르면(UNESCO 2003b),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나 집단(그리고 몇몇 사례에서는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도구, 사물, 공예품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적 공간을 비롯하여 관습, 표현물, 지식, 기술 등을 일컫는다. 세대를 거쳐 계승*

*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 그리고 이들의 환경 및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이들 세대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의 관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간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장려한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보다 덜 전문적이며 문화적 의미가 덜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더욱 친숙한 용어인 '민속', '전통 문화', '구전 유산', '대중문화'와 같은 용어를 대체했다. 이 협약에서는 그 강조점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보다도 구전 전통, 노래, 행위 예술, 의식, 장인정신, 예술적 역량, 지식체계 등의 형태를 통해 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키고 표현하는 현존하는 유산 자체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이란 단순히 상품이나 대상화된 유물, 혹은 현존하는 문화 형태를 문서화한 것이 아니었다(Seitel 2001a). 즉, 무형문화유산은 테이프나 어떤 디지털화된 형태로 녹음된 음악이나 그 가사가 아니라, 실제로 불리는 노래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가 아무리 의미를 잘 전달하고 올바르게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학자나 예술가, 혹은 기타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재창조되거나 모방된 형태로 불린다면 그것은 무형문화유산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노래를 자신의 것으로, 그리고 한 문화 집단으로써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식별자로 인식하는 바로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불릴 때 무형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을 발전시키고 그 노래를 다음 세대에 이전할 사람들에게 의해 노래가 불릴 때 그것이 무형문화유산인 것이다(Kurin 2004a).

이 정의는 특정 형태의 문화적 표현을 그들 공동체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작용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이들 집단 구성원은 역사적 관례에 따라 정당화되고 특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유산'의 자기 성찰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그러한 표현을 인식한다(Early and Seitel 2002). 따라서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그 집단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그들이 공무원, 학자, 예술가, 기업인 혹은 그 외 누구든 상관없이)에 의해 전유된 것이라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과정 및 그 외 삶의 여러 측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본다. 무형문화유산이란 생활방식으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생태학적, 정치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상호작용이라는 보다 넓은 세계로부터 쉽게 분리되지도 않는다.



협약의 제2장 3절에 따르면(UNESCO 2003b),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특성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공식 및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식별 및 문서화, 연구조사, 보존, 보호, 촉진, 강화, 전수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관련된 문화 집단 내에서 그리고 그들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된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문화유산에 생명력이 있고 이것이 역동적이며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보호받는 무형문화유산이란, 사회적 의미가 분명하며 의식적으로 다루어지는 현존하는 유산으로 정의되며, 이 협약에서 기준에 선포된 민속 및 문화적 전통에 대한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Aikawa 2004). 이 협약 이전에는, 유네스코가 민속과 문화적 전통을 무분별한 대중들이 대신 사용할만한 표현으로 인식했며, 삶의 다른 특성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당연한' 관습들로 간주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이 학자들의 문헌 기록이나 박물관 소장품으로 가장 잘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었다.

1989년 권고안의 전통문화 혹은 민속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제도적 관례에서 확인되었듯이 2003년 협약은 유산 보호 작업의 방안과 의무를 문화적 공동체에게 넘겼다.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의 기록 보관소나 국립 박물관에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고 그 형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다. 만약 한 전통이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그 속에서 지속가능하다면, 그것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유산이 문서로 기록된 노래로, 혹은 축제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민간 지식에 대한 엄청난 분량의 전문적인 논문으로, 혹은 국가 최고의 박물관에 전시된 의례 관련 물품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이란 그 형태가 영원히 유지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순수하고 핵심적인 형태를 유지할 때만이 그것이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형태와 표현들이 역사상 특정한 시점에서, 해당 유산을 지키고 따르는 집단에 의해 '순수'하거나, '실제'적이며, '진정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나, 그러한 판단은 역사에 기반을 둔 평가로서, 해당 공동체 내에서조차 변하기 쉬우며 오늘날 공동체의 여러 다양한 부분들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정의하자면, 문화유산의 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할 것이다. 한 농부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예술형태가 시간이 감에 따라 왕궁의 귀족 예술로 성장해 갈 수도 있으며, 혹은 신성한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단지 시장의 공예품이나 물물 교환을 위한 일상적인 기술로 전락하거나 장식용 관광 상품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일상생활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문화적 관례가 시간이 감에 따라 엘리트적 관례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며 이후에는 특정한 기념일이나 휴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순수함' 혹은 '진정함'이란 무엇이며,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협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보호란 창조성과 정체성 수립의 과정이자,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들을 취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보호하고 재창조해나가는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그리고 가치의 중재자들, 즉 그 변형을 인식하고 그것의 상대적 중요성과 올바른

여부를 결정할 사람들은 정부도 학자도 수집가도 애호가도 아닌, 관련 공동체의 구성원 자신이 되어야 한다.

### 어떤 기관들이 협약 이행을 추진해야 하는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할 책임은 그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즉 협약을 비준한 정부에 있다. 협정서 제13항(b)에 따르면, 각국은 오늘날 해당 국가에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합법적 조직체를 지정하거나 수립해야한다(UNESCO 2003b). 그러한 조직은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수립을 감독하고 정부 기관과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을 장려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과학적, 예술적, 홍보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방안을 고안해내게 된다.

협약은 그러한 작업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한 작업을 정부 기관이나 대학, 박물관, 문화 센터, 혹은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특정 유형의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가? 추측건대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 위원회가 몇 개월 혹은 수년 내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지도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은 아마도 문화부에 속한 정부 부처나 부서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관료적 혹은 정부의 시각에서는 합당한 선택이지만 되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한 정부의 부처는 협약이 요구하는 대로 설문조사나 목록 수립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부처는 무형문화유산을 '합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입장에 서게 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나 수단으로서 협약에 포함된 측면을 무형문화유산에 부여하게 된다. 정부 부처는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나 인력을 끌어들이 수 있고, 협약이 촉진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정부 및 사회 활동의 다른 부분들과도 연계할 수 있다. 이는 즉 경제, 교육 분야 및 법조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조정의 역할을 정부부처가 대신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소수 문화 공동체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해관계, 특히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현존하는 역동적 커뮤니티로서 그들의 생명력을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종종 자연 종교, 소수 언어, 특정한 의례, 도구 등의 문화적 관례를 없애고자 노력해왔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들 즉 저항의 노래, 투쟁의 서사시, 전통적 영토 점유를 위한 지식 등은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과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국제 인권선언과 같은 인권 헌장들은 성가신 정부의 통제나 규제로부터 개인 및 집단의 표현 양식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적 의례에 대한 정부의 목록은 특히 문화의 등기부처럼 인식될 확률이 높다. 즉 문화적 의례를 정부가 관리하거나 혹은 배제하고 정보를 잘못 활용하게 될 지도 모른다. 정부가 무형문화유산 활동을 담당하게 되면 문화에 대한 규제자와 문화를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문화의 실천자들은 그들 공동체의 생활에 불필요한 개입이 발생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정부의 통제는 또한 무형문화유산 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특수성과 뉘

양스의 문제이다. 현지화된 문화적 전통을 제대로 조사하고 문서화하며 이해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능력은 물론 민족학, 언어학, 민족음악학, 민족학 및 민족지학과 같은 문화 분야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종종 다양한 과학 및 기술적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훌륭한 무형문화유산 작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공무원시험으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표준화를 거부하고 일반적인 공식이나 관료의 영역인 공식적 업무에 반대하는, 조사와 해석의 영역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전통의 내용이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공무원의 수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 업무의 수행을 대학이 담당하기도 한다.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대학은 정부를 대신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관료주의나 정부의 정치 관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그들의 행보에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과학적인 방법과 학문적인 표준 및 윤리 등 그들 자신만의 가치를 따른다. 따라서 대학은 특히 연구, 목록화, 교육 프로그램의 고안, 문화 전수 및 지속가능성의 본질에 대한 연구와 같이 협약의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그것은 이들이 무형문화유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수진 및 연구생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과 그 프로그램들은 정부부처와 달리 대규모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대학은 전형적으로 인력층이 얇고 교수진과 그들의 관심을 이끌 역량이 부족하며, 조직의 본성상 정례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 농업 공개강좌 및 의료(대학병원 등)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는 성공했지만, 대학이 놀랄만한 사회적 동기를 찾는다거나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협약의 이행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조직은 박물관이나 박물관과 유사한 문화 관련 조직일 것이다(Kurin 2004b). 박물관은 내용 면에서 협약에 포함된 모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박물관의 정의 자체가 문화 보존 기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 박물관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통상 문화유산의 연구 및 문서화의 다양한 영역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조사 및 문서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 인턴, 자발적 의지가 높은 자원봉사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박물관은 전통과 문화 전승자들을 공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며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공개적인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학과는 달리 협약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도 깊은 수준의 훈련을 받지는 못했다. 또한 정부와는 달리 문화 영역에서 대규모의 국가적 노력을 쏟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통상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 박물관은 또한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전통을 문서화하는 것 보다는 물품의 수집에 더욱 집중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무생물이나 죽은 물체를 다루며, 국립 박물관과 지역 및 현지 박물관을 포함한 많은 박물관들은 해당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문화적 공동체와 관련하거나 이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욱더 전문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는 박물관의 본질과 업무적 측면에서는 매우 새로운 움직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물관은 문화적 물품들이 생

겨나고 사용된 공동체의 기반이나 사회적 구조로부터 갈취되거나 분리된 소장품들을 유지 및 보존하는데 주로 관심을 갖는다.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기술하였듯이 박물관은 죽거나 박제된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Kurin 2004b). 그 이유는 문화가 본래의 위치에서 살아있으며 역동적이며 지속가능한 과정으로서 보호받게 하는 데에는 박물관들의 경험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협약을 비롯한 국가에서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합된 조직 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약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권한, 법적 정당성, 그리고 다른 분야 즉 교육체계, 경제 발전 계획, 관광산업, 예술 및 문화, 미디어와 같은 분야와의 연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은 여러 관련 학문분과에 대한 훈련과 전문성, 즉, 특정 전통을 목록화해 문서로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이행 계획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을 평가하는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조사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박물관은 기록 보존 및 관련 수집품의 저장, 무형문화유산의 전시 그리고 공공교육 활동 등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성과 문화유산을 다루는 틀을 제공하고 공동체와 의사소통하는 대표적인 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NGO나 문화 옹호 집단, 현지 프로젝트 그룹 등의 기타 조직들 또한 협약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협업체 나갈 수 있다.

## 문화 집단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이전의 국제적 문화협약 이상으로 공동체의 문화 전통을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하였다. 협약은 전적으로 근본에서 시작되는 '상향식'의, 그리고 참여 위주의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 제11(b)항에 따르면 각 협약국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이들 국가는 공동체, 집단, 관련 NGO들의 참여하에, 각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속성을 식별하고 정의한다(UNESCO 2003b).*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에 대한 제5항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틀 안에서 각 협정국은 그러한 유산을 창조 및 유지, 전수하는 공동체, 집단, 개인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이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항 내용을 분석하자면 이는 유산이 보호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러한 업무의 전적인 협력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나 대학, 박물관들은 자신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고 그것을 문서화, 전시, 보호, 보존할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공동체 지도자의 동의, 주도적 문화 전승자의 조언, 공동의 결정 등 공동체의 참여는 유산 보호의 전략 및 방안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해야 한다. 제5항은 협약의 이행과 실행에 있어 공동체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프스타인(Hafstein)이 (이후에) 제대로 지적하고 있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는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국적을 뛰어넘는 관계가 확대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공동체'를 떠오르는 대안적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정부에 대한 권력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협약이 공동체에 주목한 것은 여러 가지 근거에서 발전한 것이다. 하나는 바로 대리인이라는 개념이다. 즉 문화적 전통 즉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들은 그러한 전통을 창조, 육성,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다소 특권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의 '전수자들을 실제 자신의 것이 아닌 표현 문화, 혹은 그것의 해석에 필요한 수동적이고 익명적인 수단으로 보고자 하는 엘리트적이며 식민주의적, 동양학적 그리고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하위 연구에 따른 비판과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옹호/원주민 권리자 집단, 협약의 초안자들이 공동체 내에 대리인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협약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통해 공동체의 강력한 위치를 강조하는 또 다른 추세를 드러냈다. 협약의 전문은 전 세계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정의하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전체 협약의 핵심은 전 세계 특히 현대 민족국가 내에 있는 민중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 말하는 문화적 다양성이란, 문화적 공동체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보호 노력의 주제이자 목표의 역할로 자리한다. 이는 '문화적 산물 및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2005 국제 협약(200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and Artistic Expression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 협약에서는 공동체가 아닌 국가가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한 단위로 자리했다(유네스코 2005).

반면 이번 협약에 따르면 공동체는 전통을 기록 및 조사, 전시, 공표, 장려 및 보호하는데 있어 공식적인 정부 기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협력자이며, 이러한 사실이 둘 간의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협약을 초안하는 동안 정부 대표가 발표한 성명 및 협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국제위원회의 최초 회의에서는, 문화 공동체에 부여된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를 엿볼 수 있었다. 일부 국가는 자신들이 자국의 헌법적 지위를 통해 자국의 시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모든 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들 국가는 이를 국가 주권의 문제로 간주하며, 공동체 특히 집권 정부보다 지위가 낮거나 비주류층으로 인식되는 공동체에 정부의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불쾌히 여긴다. 다른 국가의 경우 '공동체'의 구분이나 리더십, 통치체계 등이 각국의 정부 조직 내에 너무나 완벽히 흡수되어 있어서, 그러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간주한다. 간단히 말해 정부는, 자유와 자치권, 혹은 보다 큰 사회적 실체 안에 속한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가진 공동체인 것이다.

협정국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협정의 의도는 분명하다. 실제 전통을 이행하는 사람들, 즉 과거 그 전통을 이행해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정받으며, 그러한 전통을 그들 정체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들은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전통의 '소유'라는 개념에는 어느 정도 심리학적 의미가 깃들여 있다. 그것은 이들의 무형문화유산이 국가나 정부 혹은 문화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에 '속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조사와 문서화에 참여하고 목록을 만드는 활동에 학자들과 함께 협업하며 박물관, 공연센터, 출판사, 대학 그리고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전시하는 이러한 모든 유사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홍보를 위해 신문 및 방송, 라디오 기자들과 협업하고, 학교 내 무형문화유산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교사 및 교육 당국자, 커리큘럼 기획자들과 협동해야 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사회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도입하려는 계획

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 기획자들과 공무원, 관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고 또 이러한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 보호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협약의 조인국에 요구되는 유일한 명시적 행위는 제12항에 기술되어 있다.

*보호의 관점에서 각 집단을 확실히 식별해내기 위해, 각국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반영해 자국 내에 현존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루어진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UNESCO 2003b).*

목록 작성에 대한 주제는 협약의 초안과정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목록을 관리 수단으로 인식했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는 보호의 대상을 알고 그것의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목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목록 작성을 무형문화유산을 상세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전통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보다 문화인류학적 배경을 가진 이들은 목록 작성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실제 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하등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목록을 만드는 데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이라고 보았다(Kurin 2004b, Kirshenblatt-Gimblett 2004).

국가 목록 이외에도 국제적 차원의 두 개 목록이 더 있다(UNESCO 2003b). 하나는 제16항에 기술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이며, 다른 하나는 제17항에 기술된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이다. 이들 목록은 유네스코의 대표 유산 프로그램의 내용에 이어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의 성공이 그 간격을 이루고 있다(UNESCO 1972). 중요한 문화적 기념비 및 고고학적 유적지, 자연지형 등의 목록은 유형문화유산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국제적 명성을 부여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인 수준의 인식과 국제적인 명성을 활용하는 것은 꽤 일반적인 방식이다. 문화 자산에 대한 일본의 정교한 지정에서부터 한국의 인간문화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네스코의 대표 유산에서부터 미국의 국립 예술 진흥기금 및 국가 유산 장학금제도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표적 예술 작품들과 그 전통문화가 정부차원에서 치하 받고 최고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았다(나스 2002).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명성은 언론과 정부당국, 일반대중, 그리고 존경받는 예술작품과 전통을 보유한 각 문화 및 지역 공동체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명성과 존경, 인지도, 관심은 문화의 대변자과 그 이행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러한 전통을 지속 및 전수하며 확대하는데 보다 열성적이도록 한다. 이것은 스미소니언 민속 페스티벌에서 필자가 직접 겪은 분명한 사실이다. 스미소니언 민속 페스티벌에서는 연구에 기반을 둔 교육적 문화적 페스티벌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1967년 여름 이후 매년 수백 명이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워싱턴 중심부)에 모여 자신의 전통을 알린다. 매년 백만 명의 방문객과 국내외 언론, 정부 지도자 및 국회의원 등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페스티벌은, 사람들이 이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기술, 예술적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교육적, 문화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결론적으로 이 페스티벌은 문화의 전수자

들이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이름과 명성을 활용해 더 많은 이들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 페스티벌의 상징적 가치는 전통과 그 전통의 전수자들에게 그에 대한 명예와 존경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 페스티벌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미 국회의사당과 워싱턴 기념비 사이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 박물관에서 열린다.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수자들은 자신이 존경받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유산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페스티벌은 이들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시도에 있어 전통을 재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Kurin 1998). 다른 명예 프로그램 및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도 이러한 결론을 확인해 준다(UNESCO 2003a).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이행이 국제적 목적의 작성이나 명예를 할당하고 보상하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고 증명되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날 수 있듯이(유네스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같은 명예를 부여받은 주체는 실제 전통의 전수자가 아니라 그 정부나 정부 대표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긍심을 고무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촉진하는데 있기 때문에, 민중이 관심과 존경, 명예, 존중을 받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외적 명성을 얻는 전략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또 다른 형태의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협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촉진방안이다. 제13항은 한 사회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촉진하고 문화유산 보호 방안과 다른 형태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 계획의 통합을 장려한다. 또한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방안 역시 기술하고 있다. 제14항은 문화 공동체 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성공적으로 전수하고, 보다 큰 사회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UNESCO 2003b).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전략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략은 전통문화에 대한 지적 재산권 주장과 관련된 여러 문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권리 주장, 2005 협약에 따른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 문제 등을 고려해 대부분 제외되었다.

협약에는 문화의 전시와 홍보 활동 및 교육이 어떻게 이러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보호 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이드는 거의 없다. 하지만, 협약의 이행 이후에 이를 향후 '모범 사례'로써 분석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 듯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경제 및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올 지도 불분명하다. 실질적으로 보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나 금전적 보상 및 혜택 시스템은 많지 않다. 이는 경제가 문화적 전통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나 아쉬운 점이다. 상업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확대하고 유지해나가는데 강력한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목격했다. 스미소니언 민속 페스티벌에서 수천 명의 공예인들이 방직물과 바구니, 도자기와 그림, 목각품, 금속세공품과 보석류를 판매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들의 전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수많은 장인과 공예

제작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새로운 상품과 그들의 재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발전시켰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종류의 성공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산을 지키고 전수하는데 가장 큰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는 음악인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연구에 기반을 둔 교육 상품 중 하나는 스미소니언 민속 음반사(Smithsonian Folkways Recordings)에서 CD형태로 제작한 기록물이다. 이는 스미소니언 세계의 소리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듣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기록물은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전통 예술가들의 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스미소니언은 매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수백만 달러 가치의 기록물을 판매하고 음악가와 작곡자들에게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으로 매년 오십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다. 통상 음악가들은 자신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준다는 사실도 좋아한다. 많은 음악인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금전적 보상은 그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예술에 대한 후원과 지원의 형태가 바뀐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렇다. 현대 사회는 이민 및 집단 이주와 함께, 더 이상 왕궁도 왕도, 지역지배층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시장에 접근해 이득을 얻는 형태가 바뀌었을 지라도 현대 사회는 전통에 기반한 문화유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Seeger 2004, Kurin 2006).

## 결론


현재로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2003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그 원래의 의무를 달성했는가이다. 실제 이 협약이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바라거나 가정할 수 있는가? 솔직히 필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03년 협약이 제안한 간단한 원칙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단순화하기에는, 무형문화유산의 보다 거대한 생태학적,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매트릭스와의 관계가 너무나 복잡한 것은 물론 너무나 다면적이고 미묘하다. 문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문화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서 '자연스러운 문제'란 없다. 이들 유산은 현대 사회와 세계 질서를 특징짓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과 세계 체계는 그다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결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들이 관심과 자원, 창의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살아남거나 풍요로워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이는 가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특정 형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공동체와 사람들, 옹호자들의 의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듯이 성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최선의 의도 진행된 개입이, 원치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가치 없는 반향을 가져올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여기서 논의했듯이 공동체 기반의 문화를 지원하는 형태를 떠나 실상으로는 정부가 이러한 문화를 통제 및 규제함으로써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Hafstein, Kirshenblatt-Gimblett 2004). 이는 협약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인권선언이나 기타 다자간 협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약은 최소한 그 목표상으로 규범적 행위라 칭할 수 있

는 것에 대한 합당하고 보편적인 기대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협약은 확실히 국가의 권위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협약들이 위대한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다양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경우, 각국의 수많은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전통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보여주는 하나가 협약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실행됨에 따라, 공동체와 협업하는 조직과 부처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법에 대한 이행계획이 국제위원회와 전 세계의 문화 담당자들에 의해 고안 및 공유, 평가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우리의 일시적인 연구 및 분석 그리고 이론적 작업이 무형문화유산을 최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로 찾는 데에는 불충분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Kurin 2003). 어떠한 구체적인 개입이 언어와 구전 전통을 보존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통적 지식체계를 현대 사회에서 보존하고 역동성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껏 무엇을 해왔는가? 필자는 앞으로 협약이 진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발전될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는 수십 년 후에는 전 세계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훌륭하고 명확하며 경험에 기반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석

- 1 협약의 영문 전문은 UNESCO, 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참조하라(Paris, October 17, 2003).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25/132540e.pdf> (retrieved November 27, 2006)
- 2 유네스코 컨퍼런스 공동의장으로는 무니르 부체나키(Mounir Bouchenaki), 유네스코 문화 사무차장이 있었다. 컨퍼런스는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일본 외교통상부, 미국무부, 록펠러 재단, 미국 국립예술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회의 기록 및 절차, 보고는 Seitel에서 출판되었다. (2001c)